

【2019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】

회 의 명	군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		
일 시	2019. 9. 18.(수) 12:10~13:00		
장 소	대학본부 3층 제2소회의실		
참석 인원	참석자	김성환 의장, 김세봄 부의장, 조성우·유경숙·원명수·박권삼·박성신 ·이지숙·최정범·윤상학·백대근·송미나·이지연 평의원	13명
	불참자	백옥미, 백선기, 이성준 평의원	3명
안 건	군산대학교 학칙 중 일부 개정(안)		
결정사항	군산대학교 학칙 중 일부 개정(안) : 자구 수정 의결 ※ 자구 수정 내용		
	수정전	수정후	
	제41조(편입학) ③ 일반대학원 편입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	제41조(편입학) ③ 대학원 편입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	
회의내용	□ 의 장 ○ 성원 확인 후 개회 선언 ○ 군산대학교 학칙 중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 요청 □ 기획평가과 기획팀장 ○ 군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(안) 제12조(행정조직) 관련 사항 설명 후 퇴장 □ (일반)대학원 팀장 ○ 군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(안) 제41조(편입학) 관련 사항 설명 및 자구 수정 요청 - 수정 요청 사항(수정 요청 사유 :)		
	수정전	수정후	
	제41조(편입학) ③ 일반대학원 편입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	제41조(편입학) ③ 대학원 편입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	
	- 수정요청 사유 : 담당자 오기로 인하여 일반대학원으로 표기됨		
	□ 의 장 ○ 구성원 의견수렴, 규정심의위원회, 교무회의 심의 단계를 거친 내용을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수정 가능 여부 검토 요청		

회 의 명 **군산대학교 대학평의회 회의**

- 부의장
 - 대학평의회도 학칙 개정 심의 기구이므로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구 수정은 가능하며, 개정안 제41조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대학원에 자구 수정을 위임한 사항으로 대학원에서 요청한 자구 수정은 반영 가능
- 의 장
 - 원칙은 학칙 개정 심의 전(前)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나 단순 자구 수정이나 전(前)심의 단계에서 위임한 사항은 본 평의회에서 수정
- 참석 평의원 전원 동의
- (일반)대학원 팀장
 - 군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(안) [별표 2] 대학원과정 설치 학과(부) 및 입학정원, [별표 10] 대학원 학위종별 관련 사항 설명 후 퇴장
- 의 장
 - 군산대학교 학칙 중 일부 개정안 심의를 위한 거수 확인

현 행	개 정 안	거수
<p>제12조(행정조직) ① (생 략) ② 교무처에 교무과·학사관리과를, 학생처에 학생지원과 및 취업지원과를, 기획처에 기획평가과·대의협력과를, 사무국에 총무과·재무과 및 시설과를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과 및 연구지원과를 각각 둔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 <p>⑤ <u>산학협력 활성화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조직을 둔다.</u></p> <p>1. ~ 2. (생 략) 3. <신 설></p>	<p>제12조(행정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<u>기획처에 기획평가과를, 사무국에 총무과·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며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은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산학협력 활성화, 우수인재 확보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조직을 둔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대학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대외협력분부를 두고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13명 중 13명 찬성</p>

회 의 명 군산대학교 대학평의회 회의

현 행	개 정 안	거 수
<p>제41조(편입학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편입학은 전체 4학기 중 2학기에,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편입학은 전체 4학기 중 2학기 또는 3학기에 한하며,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	<p>제41조(편입학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대학원 편입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: 2학기</u></p> <p><u>2.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: 2학기, 3학기</u></p> <p><u>3.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: 2학기, 3학기</u></p> <p><u>4. 일반대학원 석·박사통합과정 : 2학기, 3학기, 4학기</u>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13명 중 13명 찬성 (자구 수정)</p>
<p>< 신 설 ></p>	<p><u>부칙(2019. 9. . 규정 제000호)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물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일반대학원 국제물류학과로 일반대학원 건설기계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기계공학과와 건설기계공학 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② 일반대학원 건설기계공학과는 수료생 학위취득시까지 존치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적용례) 제8조, 제9조, 제28조 관련 [별표 2]와 제78조제1항 관련 [별표 9]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p>13명 중 13명 찬성</p>

- [별표 2] 「대학원과정 설치 학과(부) 및 입학정원」 개정안, [별표 10] 「대학원 학위 종별」 개정안에 대한 평의원 동의 여부 확인
⇒ 참석 평의원 전원 동의

2019. 9. 18.

기록자: 행정 6급 전 영 아